■ 입학사정관 특별전형 면접해보니 …

고3이 年 300시간 봉사? 봉사활동 부풀리기 심각

수상 실적 과장·사전 준비 미흡도 문제

"'운 좋으면 혹시 알아?'하는 식으로 실적을 부풀린 학생들이 있어요. 일부지만 손해볼 것 없으니 일단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대충 응시한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최근 입학사정관제 전형 심사를 마친 조선대 입학사정관 A씨는 지원 학생들의 봉사내역과 자기소개서(경력, 연수 등)를 심사하면서 상당 부분 과장됐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을 발견했다. 봉사활동이나 수상실적 등 비교과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자 학부모나 학생들이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 입학사정관들(39명)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치러진 입학사정관 특별전형 면접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준비 요령을 살펴본다.

◇**실적 부풀리기**=A사정관은 한 수험생의 봉사활동 기록 중 특정 양로원에서만 3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 내용을 발견했다. 한 달에 25시간을 봉사한 것으로 가정하면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6시간씩 봉사한 셈이다. 고교 3학년으로서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 봉사활동 내용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자 학생은 당황했고, 활동내용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B사정관은 고아원이나 영아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물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대지 못한 채 단순히 봉사의 중요성과 필요성만을 답했다.

◇**수상 경력도 과장**=C사정관은 자기소개서 수상 경력에 선행상과 효행상을 적은 각각의 학생에게 수상 이유를 물었지만 구체적인 효행이나 선행 사례를 내놓지 못했다. D사정관은 전국경연대회에 참가한 신청서만을 제출하거나 외국어 능력시험 수험증서만 제시한 학생, 즉 수상경력이나 합격증이 없이 참가했다는 서류만을 낸 학생에게는 감점을 줬다. 해당 학생의 능력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상을 받은 것처럼 헷갈리도록 유도한 흔적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 사정관은 또 교내에서 다독상을 받은 학생에게 "본인의 진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과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라"고 질문했으나, 학생은 단순히 기억에 남는 책에 대해 어물쩍 대답해 읽은 책을 제대로 소화했는지 의문스러웠다.

◇**무성의한 준비**=E사정관은 2학년 때 '0000'라는 책을 읽고 중국과 한국의 문화차이를 알게 됐다는 학생에게 두 나라 문화의 차이점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학생은 그 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으나 정작 자신이 깨달았다는 양국의 문화 차이는 답하지 못했다.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성격을 '끈기'로 표현한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행동한 사례를 들라고 하자, 경험 사례는 하나도 없이 끈기의 중요성만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학습계획서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답이 서툰 학생이 적지 않았다.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지원 대학 입학에 대한 열정이 없는 학생으로 간주될 우려가 큰 경우다.

입학사정관들은 수험생들이 자기소개서나 학습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이나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힌 사항은 집중 검증 대상이므로 무조건 철저히 체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입학사정관은 "학생이 제시한 모든 기록을 2명의 전문가가 분석하기 때문에 진실성 있는 답변과 성의있는 자세, 열정 등이 합격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산타들의 연탄배달 광주 신세계 희망 산타 원정대원들이 15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구청장 관용차 주행거리 4배 이상 차이

하루 평균 최대 87.57㎞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날마다 업무상 출장은 물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니 만큼 원거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광주시 구청장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2천cc급 이상)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얼마나 될까?

15일 각 구청에 따르면 구(區) 회계과에서 제시한 운행 일수와 주행거리 기준, 구청장이 이용하는 관용차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61.37㎞에 달했다. 광주에서 무안까지 거리(60.3㎞)와 비슷하다.

재임 기간 중 관용차로 가장 많이 이동한 기초단체장은 전갑길 광산구청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청장은 하루 평균 87.57㎞(운행일수 1천256일, 주행거리 11만㎞) 가량 관용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집계됐다.

24시간 운행되는 북부경찰 역전지구대 순찰차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160㎞로, 주로 출·퇴근용으로 쓰이는 관용차의 특성을 감안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주행거리다.

이어 ▲유태명 동구청장 85.78㎞(〃 2천448일, 〃 21만㎞) ▲전주언 서구청장 69.33㎞(〃 819일, 〃 5만6천784㎞) ▲황일봉 남구청장 44.06㎞(〃 2천730일, 〃 12만311㎞) ▲송광운 북구청장 20.11㎞(〃 967일, 〃 1만9천447㎞) 등의 순이었다.

광주의 모 구청 관계자는 "단체장 관용차의 경우 주로 출·퇴근과 출장 때 이용된다"며 "서로 업무는 비슷한데, 각 구청별로 관용차 주행거리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7980〉 김종두

장흥 양곡창고 불 6억 피해

14일 오후 4시30분께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양곡보관창고 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관중이던 정부양곡 벼 9천여가마(40㎏)와 농협 양곡인 맥주맥 4천여가마 등 1만3천여가마를 태워 6억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이튿날 오전 8시께 진화됐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처지비관 화풀이 소파공장 연쇄 방화

쌍나팔

○…순천경찰은 15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소파공장 2곳에 불을 지른 정모(32)씨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새벽 2시40분께 순천시 풍덕동 모 소파공장에 불을 내 건물과 주차 차량을 태워 1천1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

○…정씨는 지난 11일 밤에도 이 곳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소파공장에 불을 질러 건물과 인근 주택 2채, 덤프트럭 등을 태워 3천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는 것.

○…조사 결과 정씨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화재 당시 "불이야"라고 소리치고 다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집중 추궁하자 범행일체를 자백.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민주 인사 다시 뭉친다

광주·전남 63명 29일 민주동지회 창립

"광주·전남지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민주 세력들이 다시 뭉친다."

광주전남민주동지회(가칭) 준비위원회는 15일 "1960년 4·19 이후 광주·전남의 민주 발전을 주도해온 민주세력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통합 공동체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동지회는 오는 29일 오후 6시 광주YMCA 2층 백제실에서 창립식을 갖고 광주·전남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연대를 위한 공동체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지역 내 민주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민주세력별 대표 등을 중심으로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등을 선임하고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동지회는 송기숙 전 전남대 교수와 임낙평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63명의 민주 인사들이 창립에 동의했으며, 준비위 측은 창립식을 전후로 회원들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용화 민주동지회 준비위원장은 "민주 공동체 설립은 도청별관 문제나 촛불집회 과정 등에서 보여준 민주세력 간의 견해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며 "이 모임이 향후 지역 내 민주세력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토양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한 뒤 피살

국가가 위자료 8천만원 지급해야

광주고법 판결

경찰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가 묵살당한 뒤 참혹하게 살해됐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15일 A(여·사망 당시 44세)씨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국가는 두 자녀에게 각각 4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보호 조치가 있었다면 A씨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혼녀인 A씨는 2006년 말 애인인 B씨와 헤어질 것을 결심했지만, 이에 분개한 B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A씨를 태우고 고의로 방호벽을 들이받는 등 협박을 했다.

이에 A씨는 광주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심지어 숨지기 하루 전에도 경찰에 신변의 위협을 알렸지만 '구속 사안이 아니다'며 무시당했다.

A씨는 2007년 1월 13일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온 몸을 수십 차례 찔려 살해됐고, B씨도 같은 날 밤 자신의 집에서 음독해 숨진채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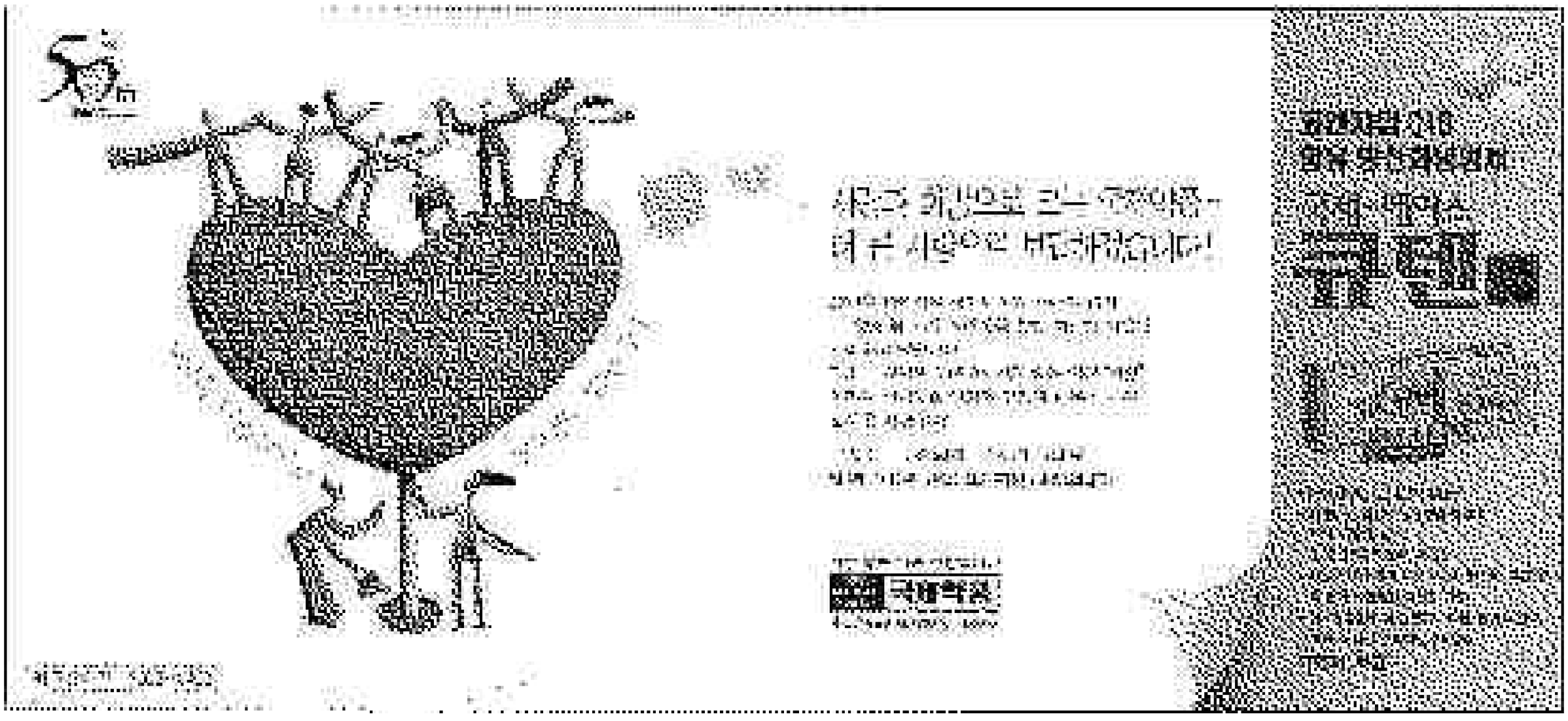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